

제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2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경필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696,991,3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6,9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696,991,3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는 2016. 10. 25.부터 2018. 6. 30.까지 서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8.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2018년	2018. 12. 31.	2019. 10. 10.	286,881,680	349,278,380
			2019. 11. 30.	289,158,540	347,712,930
합계				576,040,220	696,991,310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B는 2018. 10. 29.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5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60420호)를 마쳐주었다.

2) B는 2018. 10.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60423호)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폐업신고일인 2018. 6. 30.경부터 B의 재산상태 변동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제1 내지 1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B는 해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대해 알았고 늦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다음 날인 2019. 1. 1.에는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채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 부칙 제3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국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B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 18. 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B가 운영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액수는 B가 납부기일까지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인 696,991,31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15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각각 별개의 처분행위이고, 적어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계약서는 각 별도로 작성된 사실, ②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5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60420호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6042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이 사건 제15 부동산은 토지인 반면,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은 이 사건 제15 부동산과 인접하여 위치한 별개의 토지상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각 호실인 사실, ④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는 B를 채무자로 한 E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10.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를 채무자로 한 F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⑤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5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이 없었는데, 2019. 11. 6. 피고를 채무자로 한 F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모두 B와 피고 사이에 동일한 날짜인 2018. 10. 29.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체결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이라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9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0. 29. 기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내용	종류	금액(단위 : 원)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	집합건물	2,198,000,000
이 사건 제15 부동산	토지	184,977,000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	20,072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40
J조합 (계좌번호 3 생략)		53,928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3,139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68
K은행 (계좌번호 6 생략)		1,782,069
K은행 (계좌번호 7 생략)		1,871,449
K은행 (계좌번호 8 생략)		61,739
L조합 (계좌번호 9 생략)		12,623
합계		2,386,782,127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권	채무	576,040,220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E조합에 대한 채무	채무	1,185,622,112
합계		1,761,662,332
순자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625,119,795

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이 B의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5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32,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액 184,977,000원보다 47,023,000원(=232,000,000원-184,977,000원)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이 B의 소극재산을 초과하지만, B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B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기까지 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① 채무자인 B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삼촌과 조카지간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내지 14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14억 700만 원으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21억 9,800만 원보다 7억 9,100만 원(=21억 9,800만 원-14억 7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법률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1,185,622,112원인 사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0. 30.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변론 종결 당시의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의 2018. 10. 29.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2,198,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은 2,198,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1,185,622,112원을 공제한 잔액 1,012,377,888원(=2,198,000,000원-1,185,622,112원)이 된다.

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96,991,310원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 합계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14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96,991,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96,9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호중, 판사 강동훈, 판사 민양이

별지 목록

순번	부동산의 표시
1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2층 O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5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26.0260
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2층 Q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5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26.0260

3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2층 R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3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7.9932
4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2층 S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8.3551
5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2층 T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8.3551
6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4층 U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U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5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26.0260
7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4층 V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5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26.0260
8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4층 W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3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7.9932
9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4층 X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8.3551
10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4층 Y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8.3551
11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7층 Z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Z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5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26.0260
1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7층 AA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5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26.0260
13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제7층 AB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9.8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32.8159
14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물 제7층 AC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원물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지1층 18.13㎡ 1층 35.15㎡ 2층 200.63㎡ 3층 200.63㎡ 4층 200.63㎡ 5층 200.63㎡ 6층 200.63㎡ 7층 194.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대 6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A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7분의 18.3551
15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D 대 153㎡

